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나6872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이●● (●●-●●)

대전 중구 용두동 56-10 ●●

2. 최●● (●●-●●)

대전 동구 판암동 ●●

3. 최●● (●●-●●)

대전 중구 문화동●●

4. 최●● (●●-●●)

대전 서구 관저동 142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피항소인

1.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68

대표이사 윤진홍

2.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컴파니

미합중국 뉴욕주 10005 뉴욕시 파인가 70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대표자 미합중국인 로버트 게리 먼스터맨

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

대표이사 박성규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4.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표이사 신은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이두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가합446 판결
변론종결	2006. 11. 14.
판결선고	2006. 12.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①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100,460,000원, ② 피고 아

메리칸홈어슈어런스컴파니는 원고 이●●에게 10,050,000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6,700,000원, ③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58,780,000원, ④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16,700,000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11,1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70,000,000원, ② 피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컴파니는 원고 이●●에게 7,000,000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4,690,000원, ③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35,000,000원, ④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11,666,666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7,777,7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신청한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 _____

 판사 김●● _____

 판사 이●● _____